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4. 11 선고 2019가단2481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1. B

2. C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9. 4. 11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B은 5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. 8. 28.부터 2019. 2. 7.까지 연 5%, 그

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
나. 피고 C는 위 가.항 기재 돈 중 25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. 8. 28.부터 2019. 2. 7.까지

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 법조

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이준구

별지